|  |  |  |
| --- | --- | --- |
| **코로나19 방역 관련 20가지 세수혜택 Q&A**  국가세무총국, 2020년 2월 22일  Q1. 회사는 직원을 조직하여 공익성사회조직에 코로나19 방역으로 사용하도록 기부하였습니다. 공익성사회조직은 개개인에게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회사에게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개인소득세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A1: 네, 가능합니다. 개인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정책을 향유할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 기부에 따른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9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즉, 기관 및 기업/사업단위가 직원을 일괄 조직하여 공익기부를 전개할 경우, 납세자는 통합 발행한 기부영수증과 직원 명세서에 의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이 공익성사회조직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공익성사회조직이 사정으로 인하여 적시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영수증을 발행해주기로 승낙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개인소득세 공제정책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A2: 네, 가능합니다. 개인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정책을 향유할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 기부에 따른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9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재세 2019년 제99호 공고 규정에 따라 만약 개인이 기부 시 적시에 기부영수증을 취득할 수 없을 경우, 임시로 기부은행 지급증빙에 의거하여 공제정책을 향유할 수 있으며, 기부일로부터 90일 이내 기부영수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Q3. 제가 구매하여 기부한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 계산 시 공제하나요?  A3: 개인이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기부금 전액에 대해 공제정책을 향유할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 기부에 따른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9호)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재세 2019년 제99호 공고 규정에 근거하여 마스크 및 방호복 등 물자를 기부할 경우, 시장가격에 맞춰 기부액을 확정하고 세전공제 정책을 향유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익기부의 유관제도 요구에 따라 물자기부를 받은 공익성사회조직은 상응하는 방법에 따라 기부물자의 시장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물자를 구매한 시간과 실제 기부한 시간이 매우 근접한 상황이라면 공익성사회조직은 구매가격에 따라 시장가격을 확정합니다.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 시장가격은 기부자의 확인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기부자는 공익성사회조직과 확인한 물자의 시장가격을 기부액으로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Q4. 당사는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중 코로나19 방역 중점보장물자 생산기업에 속합니다. 생산량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를 새로 취득하였으며, 주로 보장물자를 생산하나 동시에 코로나19와 무관한 일부 기타물자를 생산하는데 일회성 당기원가비용으로 계상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일회성 당기원가비용으로 계상하여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코로나19 기간 당사가 직원에게 마스크 구매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로 처리할 수 있나요?  A5: 귀사가 직원에게 마스크 구매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직원복리후생비로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6. 당사는 요식기업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일부 지난해 예약된 연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미 구매한 식자재를 판매할 수도 없고 또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A6: 식자재는 요식기업의 재고에 속하며 변질된 상황이기에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자산손실에 따른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25호)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자산손실자료 비치보존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15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에 자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소득세 연간 납세신고서 상의 <자산손실 세전공제 및 납세조정명세서>에 기입만 하면 자산손실 관련자료를 다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자료는 기업에서 비치 보존하시면 됩니다.  Q7. 코로나19 기간 작업장소 안전청결위생을 보증하기 위해서 당사는 온라인으로 대량의 소독액을 구매하였습니다. 다만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걸 증빙을 삼아 세전공제를 처리할 수 있나요?  A7: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 제28호)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은 국내에서 발생한 지출항목이 증치세 과세항목(이하 ‘과세항목’)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이 이미 세무등기를 처리한 증치세납세자이고, 그 지출은 세금계산서(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대리발행한 세금계산서 포함)로 세전공제 증빙이 됩니다. 상대방이 법에 의거 세무등기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단위이거나 또는 소액 단발성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일 경우, 그 지출은 세무기관이 대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취 증빙 및 내부 증빙으로 세전공제 증빙이 됩니다. 수취 증빙에는 수취단위명칭, 개인성명 및 신분증번호, 지출항목, 수취금액 등 관련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Q8.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에서 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방역 관련 기부에 따른 세수문제에 관하여 징수관리, 정책문제는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9호를 참조하여 집행이 가능하나요? 예를 들어, 단위 직원이 회사에 기부금을 내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기부하였는데 개인이 개인소득세 계산 시에는 어떻게 세전공제를 진행하는지요? 개인이 기부한 마스크 등 물품은 어떻게 금액을 확인하나요?  A8: 참고가 가능합니다. 금번 코로나19 개인 기부금 전액 공제정책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익자선사업 기부에 따른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99호)에 따라 집행하며, 즉 기관 및 기업/사업단위가 직원을 일괄 조직하여 공익기부를 전개할 경우, 납세자는 통합 발행한 기부영수증과 직원 명세서에 의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Q9.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에는 단위가 개인에게 나눠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인 폐렴 예방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과 보호용품 등 현물(현금 불포함)은 급여, 보수수입에 계상하지 않으며, 개인소득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건 중 ‘약품’, ‘의료용품’, ‘보호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9: 약품, 의료용품, 보호용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이들을 하나씩 열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상 코로나19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약품, 의료용품, 보호용품 물품이기만 하면 예를 들어, 마스크, 방역 고글, 소독액, 장갑, 방역복 등은 모두 재세 2020년 10호 공고 관련 면세 규정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Q10.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1, 2, 3조에서 언급한 물품과 화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있나요?  A10: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1, 2조에서 언급하고 소득세 전액 공제정책 향유가 가능한 물품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네요. 2020년 9호 문서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성사회조직, 국가기관을 통해 기부하거나 또는 코로나19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직접 기부할 경우, 또한 이러한 기부 용도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공제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즉, 세수정책은 기부 용도만을 강조하는 것이지 어떤 물품과 화물을 기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Q11. 저희 단위와 직원 개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부를 진행하여 이를 전액 공제 시, 과세소득액으로 공제가 부족하거나 또는 초과된 부분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A11: 기업소득세 측면에서 기업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부 지출을 한 경우, 과세소득액 계산 시 전액 공제로 처리하였기에 공제가 부족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결손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결손은 정상적으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세에 측면에서는 현행 개인소득세법 정책 체계 하에 다음연도 이월공제에 관한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기부는 다음연도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12. 보험회사가 코로나19 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병원에 직접 기부한 단체의료상해보험(보험은 의료진이 수혜자)은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9호 제3조의 증치세 면제징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A12: <영업세의 증치체 개정징수 시범 실시방법> (재세[2016]36호 첨부1, 이하 ‘36호 문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공익사업 또는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사용할 경우, 판매서비스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지 않기에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코로나19 방지를 담당하는 병원에 무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9호 공고에서 규정한 화물기부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제36호 문건 유관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또는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사용한 무상서비스 제공에 속하므로 판매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Q13.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제8호 공고 및 제9호 공고에서 규정한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에 부합하나 문건이 발표되기 전, 납세자가 관련 업무에 관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중 일부는 회수하여 폐기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어려울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증치세를 납부하고 기타 부분은 계속하여 면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A13: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관한 세수 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2020년 제4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8호 공고와 9호 공고 관련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미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는 이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해 보통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이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관련된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 집행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8호 및 9호 공고 발표 이전에 납세자에게 관련 과세행위가 발생할 경우 8호 및 9호 공고에서 규정한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나 단, 납세자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하였고 또한 상술한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 상응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고, 그 잔여 수입은 여전히 면세정책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발표된 후, 납세자는 8호 및 9호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정책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사용해야 합니다.  Q14. 납세자가 1월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일시적으로 폐기할 수도 없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문건 요구에 따라 관련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 집행기간 만료 후 1개월 내 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2월분 증치세 납세신고를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면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A14: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관한 세수 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 (2020년 제4호) 제3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8호 공고 및 9호 공고 관련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는 이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적용해 보통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이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적시에 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관련된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 집행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2월분 증치세 납세신고를 처리할 때 우선적으로 면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Q15. 납세자는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제5조의 면세정책에 부합하여 1월에 세율을 적용한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우대를 향유할 수 있나요?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4호 제3조 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우선 면세를 향유하고, 증치세 면제징수 정책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나요? 후속 우대를 향유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A15: <국가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관한 세수 징수관리사항에 관한 공고> (2020년 제4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8호 공고와 9호 공고의 관련 증치세면제정책을 적용받은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경우 대응되는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한 후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제 정책을 적용하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전염병 방역기간에 이미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응당히 대응한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적시에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치세 면제정책을 먼저 적용하고 관련 증치세 면제정책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내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완성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8호 공고와 9호공고의 관련 증치세 면제정책을 적용받을 경우 상술규정에 따라 대응한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기존 세금계산서를 폐기처분한 것은 오직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세율적용한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회수한 후 다시 발행하여 면제정책을 향수할 필요가 없으며 직접 면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하달한 후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면세우대를 향수할 때, 만일 세율 또는 징수율 란을 명시한 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세율 또는 징수율 란에 "면세"글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Q16.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용 마스크, 알코올 등 방호용품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구매할 때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매입항목은 ‘단체복리용’에 적용하여 공제할 수는 없나요?  A16: 증치세 임시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사가 코로나19 기간에 구매한 마스크와 알코올 등 방호용품을 기업의 생산 재개로 사용할 경우 이는 특수시기의 노동보호용품에 속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세금공제 증빙을 취득할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Q17.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8호 제5조 규정에 따르면 주민에게 필수생활물자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합니다. 여기서 필수생활물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확정하나요? 당사는 어떻게 면세 판단을 해야 할까요?  A17: <재정부, 세무총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 유관 세수정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20년 제8호) 제5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주민에게 필수생활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로 취득한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에게 필수생활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택배 수취 및 배송서비스로 취득한 수입은 주민 개인에게 택배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취 및 배송서비스로 취득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Q18. 2020년 2월분 증치세 신고납세기한을 28일까지 연장하였는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선택체크 확인 기한도 연기가 되나요?  A18: 네, 맞습니다. <국가세무총국의 2020년 2월분 납세신고기한 유관사항 진일보 연장에 관한 통지> (세총함[2020]27호) 규정에 근거하여 2월분 납세신고기한을 2월 28일까지 더 연장할 것이고, 납세자가 증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플랫폼을 통해 증치세 공제증빙에 대한 용도확인을 진행하는 기한도 2월 28일까지 연장합니다.  Q19. 코로나19 원인으로 당사는 장기적으로 저희 공장을 임차한 기업에게 3개월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는데 이 3개월에 상응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임대료를 사전에 받아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저는 3개월치 임대료를 반환한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9: <국가세무총국의 토지대금 공제기간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016년 제86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면제기한을 약정한 경우,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 실시방법> (재세[2016]36호 첨부1) 제14조에 규정된 판매서비스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지 않기에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귀사는 임대차 보충계약서 체결을 통해 상술한 임대면제기간 증치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이미 사전에 임대료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반환한 3개월치 임대료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응하는 임대료 금액을 상계해야 합니다.  Q20. 저희 공장은 부직포를 생산합니다. 코로나19 원인으로 마스크 수요량이 대폭 증가하여 특히 평소의 5배 급여로 직원을 모집하고 퇴사한 지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区)정부는 저희 공장에게 일부 가동보조금을 주었는데 이 보조금도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20: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 인정 확인기한 등 증치세 징수관리문제 폐지에 관한 공고> (2019년 제45호) 제7조에는 납세자가 취득한 재정보조금수입이 화물판매,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의 수입 또는 수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취득한 기타 유형의 재정보증금수입은 증치세 과세수입에 속하지 않기에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구(区)정부에서 귀하 공장에게 지급한 가동보조금은 귀하 공장이 판매한 화물이나 또는 제공한 서비스 등의 수입이나 수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 **疫情防控税收优惠20问**  国家税务总局，2020年2月22日  1.公司组织员工向公益性社会组织捐款用于疫情防控，公益性社会组织没有为每个人开具捐赠票据，而是统一为公司开具了捐赠票据，这种情况下员工可以进行个税税前扣除吗？    　　答：可以，个人在享受应对新冠肺炎疫情捐赠全额扣除政策时，具体操作办法应按照《财政部 税务总局关于公益慈善事业捐赠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99号）执行，即机关、企事业单位统一组织员工开展公益捐赠的，纳税人可以凭汇总开具的捐赠票据和员工明细单扣除。    2.个人通过公益性社会组织向疫情防控的地区进行了捐赠，由于公益性社会组织因故无法及时开具票据，但承诺过一段时间再给我开具票据，这样情况我还能享受个税扣除政策吗？    　　答：可以，个人在享受应对新冠肺炎疫情捐赠全额扣除政策时，具体操作办法应按照《财政部 税务总局关于公益慈善事业捐赠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99号）执行。根据财税2019年第99号公告规定，如果个人在捐赠时不能及时取得捐赠票据的，可以暂凭捐赠银行支付凭证享受扣除政策，并在捐赠之日起的90日内取得捐赠票据即可。    3.我购买并捐赠的口罩防护服等医疗物资，按照什么金额在计算个人所得税时扣除？    　　答：个人在享受应对新冠肺炎疫情捐赠全额扣除政策时，具体操作办法应按照《财政部 税务总局关于公益慈善事业捐赠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99号）执行。根据财税2019年第99号公告规定，捐赠口罩、防护服等物资的，应按照市场价格确定捐赠额，享受税前扣除政策。同时，根据公益捐赠的有关制度要求，接受物资捐赠的公益性社会组织会按照相应的办法确认捐赠物资的市场价格。如，在个人购买物资的时间与实际捐赠的时间很接近的情况下，公益性社会组织会按照购买价格确定物资市场价格。需要说明的是这个市场价格会取得捐赠者的确认。因此，捐赠者可以按照与公益性社会组织确认的物资市场价格确定捐赠额。    4.我企业属于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中的疫情防控重点保障物资生产企业，为扩大产能新购置的相关设备，主要生产保障物资同时也生产与疫情无关的一些其他物资，是否允许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企业所得税税前扣除？    　　答：可以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企业所得税前扣除。    5.疫情期间，我公司给员工发放的购买口罩的费用，能否进行企业所得税税前扣除？    　　答：贵公司给员工发放的购买口罩的费用，可以在企业所得税税前扣除。如果发放现金补贴，可以作为职工福利费税前扣除。    6.我们是一家餐饮企业，受疫情影响，部分年前预定的酒席被退订，已经采购的食材无法售出并已经变质，请问能否作为损失在企业所得税税前扣除？    　　答：食材属于餐饮企业的存货，发生变质的情况，可以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资产损失所得税税前扣除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25号）的相关规定进行税前扣除。并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资产损失资料留存备查有关事项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15号）规定，企业发生资产损失，仅需填报企业所得税年度纳税申报表《资产损失税前扣除及纳税调整明细表》，不再报送资产损失相关资料。相关资料由企业留存备查。    7.疫情期间，为了保证工作场所安全干净卫生，我公司在网上购买了一批消毒液，但是拿不到增值税发票，这种情况还能以什么作为凭证税前扣除?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所得税税前扣除凭证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8号）规定，企业在境内发生的支出项目属于增值税应税项目（以下简称“应税项目”）的，对方为已办理税务登记的增值税纳税人，其支出以发票（包括按照规定由税务机关代开的发票）作为税前扣除凭证；对方为依法无需办理税务登记的单位或者从事小额零星经营业务的个人，其支出以税务机关代开的发票或者收款凭证及内部凭证作为税前扣除凭证，收款凭证应载明收款单位名称、个人姓名及身份证号、支出项目、收款金额等相关信息。    8.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规定的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捐赠税收问题，涉及的征管、政策问题是否可以参照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99号执行？如：单位员工把捐款给公司，由公司统一捐赠，个人怎么在计算个税时候税前扣除？个人捐赠的口罩等物资如何确认金额？    　　答：可以参照，本次疫情个人捐赠全额扣除政策的具体操作办法，按照《财政部 税务总局关于公益慈善事业捐赠个人所得税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19年第99号）执行，即机关、企事业单位统一组织员工开展公益捐赠的，纳税人可以凭汇总开具的捐赠票据和员工明细单扣除。    9.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10号规定：单位发给个人用于预防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的药品、医疗用品和防护用品等实物（不包括现金），不计入工资、薪金收入，免征个人所得税。请问这个文件里的“药品”“医疗用品”“防护用品”都包含什么内容？    　　答：考虑到药品、医疗用品、防护用品种类很多，政策上难以将他们一一正列举，因此原则上，只要是与预防新冠肺炎直接相关的药品、医疗用品、防护用品物资，如口罩、护目镜、消毒液、手套、防护服等，都可以享受财税2020年10号公告有关免税的规定。    10.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第一、二、三条中提到的物品和货物是否有具体范围？    　　答：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第一、二条涉及所得税捐赠什么物品可以享受全额扣除政策的问题。根据2020年9号文件规定，企业和个人只要通过符合条件的公益性社会组织、国家机关捐赠，或者直接向承担疫情防治任务的医院捐赠，并且这些捐赠的用途是用于应对新冠肺炎疫情的，即可享受全额扣除政策。即税收政策只强调捐赠的用途，而不限制捐赠了什么物品和货物。    11.我单位和员工个人发生符合条件的捐赠，全额扣除时，应纳税所得额不足以扣除，超过部分是否可以结转？    　　答：企业所得税方面，企业发生的符合条件的捐赠支出，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已全额扣除，不存在不足扣除问题。如果出现亏损的，可以按照规定亏损正常结转。个人所得税方面，在现行个人所得税法政策体系框架下，尚无结转以后年度扣除的相关规定。因此，个人捐赠是不可以结转以后年度扣除的。    12.保险公司直接捐赠给疫情防治任务医院的团体医疗伤害保险（保险是给医护人员的），可以享受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9号第三条的免征增值税优惠吗？    　　答：按照《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财税〔2016〕36号附件1，以下简称36号文件）规定，纳税人向其他单位或者个人无偿提供服务，用于公益事业或者以社会公众为对象的，不属于视同销售服务，不征收增值税。    　　保险公司向承担疫情防治的医院无偿提供保险服务，不属于财政部 税务总局2020年第9号公告规定的货物捐赠范畴，但可以按照36号文件有关规定，对其用于公益事业或者以社会公众为对象的无偿提供服务，不视同销售征收增值税。    13.如符合财政部 税务总局2020年第8号公告、第9号公告规定的免征增值税政策，但在文件下发前，纳税人已经就相关业务开具了增值税专用发票，其中部分难以追回作废或者开具红字发票，请问能否选择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部分缴纳增值税，其他部分仍享受免税优惠？    　　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第三条规定，纳税人适用8号公告和9号公告相关免征增值税政策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或者作废原发票，再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并开具普通发票。纳税人在疫情防控期间已经开具增值税专用发票，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而未及时开具的，可以先适用免征增值税政策，对应红字发票应当于相关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完成开具。    　　在8号、9号公告发布前，纳税人发生相关应税行为，可适用8号、9号公告规定的免征增值税政策，但纳税人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且无法按上述规定开具对应红字发票或者作废原发票的，其对应的收入应按规定缴纳增值税，其余收入仍可享受免税政策。公告下发之后，纳税人应按照8号、9号公告等规定适用征免税政策并开具和使用发票。    14.纳税人1月开具了增值税专用发票，由于暂时不能作废以及开具红字发票，准备按照文件要求在相关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完成开具，请问在办理2月属期增值税纳税申报时，是否可以先按照免税申报？    　　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第三条规定，纳税人适用8号公告和9号公告相关免征增值税政策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或者作废原发票，再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并开具普通发票。纳税人在疫情防控期间已经开具增值税专用发票，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而未及时开具的，可以先适用免征增值税政策，对应红字发票应当于相关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完成开具。    　　因此，纳税人可以在办理2月属期增值税纳税申报时，先按照免税进行申报。    15.纳税人符合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第五条的免税政策，1月份开具适用税率的增值税普通发票，是否需要将发票收回或者开具红字才可以享受优惠？是否可以参照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4号第三条第二项规定先享受免税，在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再开具红字发票？后续享受优惠如何开具普通发票？    　　答：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征收管理事项的公告》（2020年第4号）第三条规定，纳税人适用8号公告和9号公告相关免征增值税政策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或者作废原发票，再按规定适用免征增值税政策并开具普通发票。纳税人在疫情防控期间已经开具增值税专用发票，应当开具对应红字发票而未及时开具的，可以先适用免征增值税政策，对应红字发票应当于相关免征增值税政策执行到期后1个月内完成开具。    　　纳税人适用8号公告和9号公告相关免征增值税政策的，按照上述规定，需要开具对应红字发票或者作废原发票的，仅针对“增值税专用发票”。已经开具适用税率的增值税普通发票的，不需要将发票追回换开后才享受免税政策，可直接进行免税申报。公告下发之后，纳税人按照规定享受免税优惠时，如果开具的是注明税率或征收率栏次的普通发票，应当在税率或者征收率栏次填写“免税”字样。    16.我公司买来发给员工用于新型冠状病毒的口罩、酒精等防护用品，买的时候取得了增值税专用发票，这部分进项是否适用“用于集体福利”而无法抵扣？    　　答：按照增值税暂行条例等相关规定，你公司在疫情期间购买的口罩、酒精等防护用品，用于本企业复工复产的，属于特殊时期的劳保用品，取得合法有效扣税凭证的，其进项税额可以从销项税额中抵扣。    17.财政部 税务总局公告2020年第8号第五条中规定，为居民提供必需生活物资快递收派服务取得的收入免征增值税。请问这里的必需生活物资具体范围如何确定？我公司应当如何判断是否免税？    　　答：《财政部 税务总局关于支持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2020年第8号）第五条规定，对纳税人为居民提供必需生活物资快递收派服务取得的收入，免征增值税。为居民提供必需生活物资快递收派服务取得的收入，是指为居民个人快递货物提供的收派服务取得的收入。    18.2020年2月份增值税申报纳税期限进一步延长到28号之后，增值税专用发票勾选确认的期限是否也会延期？    　　答：是的。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延长2020年2月份纳税申报期限有关事项的通知》（税总函〔2020〕27号）规定，2月份纳税申报期限将进一步延长至2月28日，纳税人通过增值税发票综合服务平台对增值税扣税凭证进行用途确认的期限也相应延长至2月28日。    19.因为疫情原因，我公司给长期承租我方厂房的企业减免了三个月的租金，这三个月对应的租金是否需要缴纳增值税？由于租金已经提前预收并开发票给对方，我退还三个月租金后应如何处理？    　　答：根据《国家税务总局关于土地价款扣除时间等增值税征管问题的公告》（2016年第86号）规定，纳税人出租不动产，租赁合同中约定免租期的，不属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财税〔2016〕36号附件1）第十四条规定的视同销售服务，不征收增值税。你公司可以通过签订租赁补充协议适用上述免租期增值税政策。由于你公司已提前预收租金并开票，因此退还的三个月租金，应开具红字发票，冲减对应的租金金额。    20.我工厂是制作无纺布的，因为疫情原因口罩需求量大涨，特以平时5倍工资召回员工并积极联系离职员工开工，区政府给我工厂发放了一笔开工补贴，请问这笔补贴需要缴纳增值税吗？    　　答：《国家税务总局关于取消增值税扣税凭证认证确认期限等增值税征管问题的公告》（2019年第45号）第七条规定，纳税人取得的财政补贴收入，与其销售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不动产的收入或者数量直接挂钩的，应按规定计算缴纳增值税。纳税人取得的其他情形的财政补贴收入，不属于增值税应税收入，不征收增值税。区政府给你工厂发放的开工补贴，与你工厂销售货物或者提供服务等收入或数量不直接相关，不需要就此笔补贴计算缴纳增值税。 |